

##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7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

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『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』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###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?

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**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**이 해당 연도 **(2018년)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**하는 경우,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

※ 올해부터 신고 **기준금액 인하(10억원 → 5억원)**

특히 올해부터는 **신고 기준금액**이 10억 원에서 **5억 원으로 인하**되어 처음으로 신고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
**해외유학생, 해외 파견 근로자** 또는 **국외 근무 공무원**이나 **상사 주재원**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에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**거주자**에 해당하여 **신고의무**가 있습니다.

국세청에서는 신고대상자가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20% 이하의 **과태료**를 부과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**통고처분**이나 **형사처벌**(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%~20% 벌금 부과)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.

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**신고기간(2019.6.1.~7.1.)** 내에 반드시 신고 하여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.

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([www.nts.go.kr](http://www.nts.go.kr)) > 성실신고지원 > 해외금융계좌신고)를 참고하시거나,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(☎126→2→6),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(☎044-204-2882 ~ 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